2-2 산학협력단 연구원 임용 규정

2022. 12. 2. 제정 2025. 12. 4. 개정

주무부서 : 산학협력단 경영지원팀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중앙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산학협력단 연구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4.8.12>

제2조(적용) 이 규정은 산학협력단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외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 <개정 2024.8.12>

제3조(정의) "연구원"이라 함은 소속이 없는 자로 산학협력단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처 또는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일정 기간 본교 교원이 수행하는 외부 연구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.

제4조(직위 및 자격) 연구원 직위별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- 1. 연구전담교수: 비전임교원 임용절차에 의거하여 임용된 자로 박사학위 취득 후 연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 - 가. 책임자급: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으로 교수급의 연구실적을 가진 자
 - 나. 책임급: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으로 부교수급의 연구실적을 가진 자
 - 다. 선임급: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으로 조교수급의 연구실적을 가진 자
- 2. 박사후연구원: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미만인 자
- 3. 전임연구원: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7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
- 4. 연구보조원: 최종 학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 - 가. 석사: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또는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
 - 나. 학사: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
 - 다. 전문학사: 전문학사학위 소지자
- 5. 연구행정원: 연구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행정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임용된 자로 연구보조원 및 전임연구원의 자격 기준 및 인건비 산정 기준을 따른다. 〈개정 2025.12.04.〉
- 6. 연구행정지원전담요원: 산학협력단 연구 행정지원 전담요원 지원제도를 통해 임용된

자로 「산학협력단 지원제도 관리지침」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. 〈신설 2025.12.04.〉 [본조 전문 개정 2024.8.12]

- **제5조(임용조건)** ① 연구원은 참여하는 외부 연구과제의 연구책임교수가 추천하고 산학협력단장 내부결재를 득하여 임용한다.
 - ② 연구책임교수는 연구원 임용 시 인건비(급여, 4대 사회보험 기관부담금, 퇴직금) 재원을 연구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8.12>
 - ③ 연구원의 임용일은 매월 1일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24.8.12>
 - ④ 연구원의 보수는 별표1에 의거하여 연구원 자격기준별 월 급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 유형과 상관 없이 참여하는 전체 연구과제를 합산하여 매월 지급 받는 총 금액으 로 정한다. 〈개정 2024.8.12〉
 -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지원기관이 별도로 자격 및 인건비 지급 기준을 사업규정 또는 운영지침으로 정하고 서면으로 고지한 경우 해당 기준 내에서 월 급여를 계상할 수 있으며, 단일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. <개정 2024.8.12>
 - ⑥ 타 기관 재직자는 연구원으로 임용할 수 없으며, 타 기관 재직 여부는 건강보험자 격득실확인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로 확인한다. 단, 시간강사 신분으로 타 기관의 사회보험 자격이 취득된 자는 예외로 한다. 〈개정 2024.8.12〉
 - ⑦ 연구책임교수는 연구원의 임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책임지며,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과제별 계약기간에 납부 의무가 발생한 제반 비용을 연구과제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우 연구책임교수가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여 부담한다. 〈개정 2024.8.12〉
 - ⑧ 연구원 인건비 산정을 위한 경력의 인정 범위는 해당 분야의 근무 경력에 한하며, 증 빙서류로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04.25.>
- 제6조(임용계약) ① 연구원 임용 시 참여 연구과제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4.8.12〉
 - ② 연구원의 보수는 참여하는 외부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재원으로 하며 근무시간별 최저임금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. 단, 「연구 행정지원 전담요원 지원제도」를 통해 지원하는 연구행정지원전담요원 인력 보수의 경우, 본부로 배정된 간접비를 재원으로 할 수 있다. 〈개정 2025.04.25., 2025.12.04.〉
 - ③ 연구원 임용 시 참여 연구과제별로 최소 1일 1시간, 1주 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, 평일 기준 1일 8시간,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. 〈신설 2024.8.12〉
 - ④ 연구원 임용 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. 단, 참여 연구과제의 협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계획 및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참여 연구과제의 당해연도(다년도) 협약기간 내에서 임용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〈신설 2024.8.12〉
- 제7조(임용절차) ① 연구책임교수는 연구원 신규 임용 시 임용시작일 1개월 전까지 다음

-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근로계약서(직위별) 2부
- 2. 개인정보보호서약서 1부
- 3. 임금내역표 2부
- 4. 이력서 1부
- 5. 학력증명서 학위별 각 1부
- 6. 경력증명서(해당 시) 각 1부
- 7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
- 8.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
- 9. 주민등록등본 1부
- 10. 사회보험 자격 취득 신고서 1부
-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원 발령 사항을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.
- **제8조(복무)** ① 연구원은 연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하여야 하고 연구책임교수의 지시에 대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 - ② 연구원은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무장소는 서울 및 다빈치 캠퍼스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업무상 필요가 있을 경우 연구책임교수의 지도 하에 별도의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. 〈개정 2024.8.12〉
 - ③ 연구원은 연구 전념을 위하여 타 기관에 전속되는 직을 겸할 수 없다. 산학협력단 장의 승인하에 교내 강의는 주당 6시간 이내, 교외 강의는 주당 3시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내·외 강의 시간을 합산한 총 강의 시간은 주당 6시간을 초과할수 없다. 단, 참여 연구과제에서 강의 시수 제한이 있는 경우 해당 지침을 따른다. 〈개정 2025.12.04.〉
 - ④ 연구원의 휴가는 연구책임교수가 관리하며, 사전에 연구책임교수의 승인을 득해야한다. 〈신설 2024.8.12〉
- **제9조(4대 사회보험 가입 및 퇴직금)** ① 4대 사회보험 가입은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.
 - ② 연구원이 참여하는 전체 연구과제를 합산하여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각 연구과제에서 퇴직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며,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에 의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. 〈개정 2025.12.04.〉
 - ③ 4대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의 재원은 참여하는 외부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재원으로 한다. 만약 외부 연구과제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우 연구책임교수가 직접 부담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4.8.12〉
- 제10조(임용계약 변경)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교수는 변경사항 적용 기준일 1개월 전까지 변경 근로계약서류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임용 기간의 변경

- 2. 참여 연구과제 변경
- 3. 참여 연구과제별 월 급여 변경
- ② 참여 연구과제 변경은 익월부터 지급 되는 인건비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에 따른 지급 받은 급여 반납 및 급여 소급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.
- ③ 2개 이상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 연구과제별 월 급여 변경 시 임용 기간 중 참여하는 전체 연구과제를 합산하여 지급 받는 월 급여 총액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④ 신규 임용 시 정한 월 급여 총액은 재임용 단위로 변경하되 임용 기간 중 월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.
- ⑤ 연구비 지원기관의 사정에 의해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임용 기간 및 월 급여를 변경할 수 있다.
- ⑥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목적으로 연구원의 임용 기간을 단축하여 변경할 수 없다. 〈신설 2024.8.12〉
- 제11조(재임용) 연구책임교수는 연구원 재임용 시 임용시작일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근로계약서 2부
 - 2. 개인정보보호서약서 1부
 - 3. 임금내역표 2부
 - 4. 이력서 1부
 - 5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
 - 6. 퇴직연금 가입 서류 1부
- 제12조(면직) ① 연구원은 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사전 통지 등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면 직되며 만료일 다음 날에 신분이 상실된다.
- ② 임용 기간 만료 전 중도 퇴직 시 퇴직일 1개월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사직서 1부
- 2. 개인정보보호서약서 1부
- 3. 사회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 1부
- 4. 사회보험료 퇴직정산금 납부 동의서 1부
- ③ 연구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이전까지 업무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 연구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신분증 등 제반 물품 및 서류를 퇴직일 이전까지 반환하여야 한다. 〈신설 2024.8.12〉
- 제13조(임용취소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.
 - 1.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행위가 발견된 경우
 - 2. 이 규정 임용자격에 미달한 경우 〈개정 2024.8.12〉

- 제14조(준용) ① 연구전담교수의 임용에 관한 기타 사항은 본교 「비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다. <개정 2024.8.12>
 - ②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임용에 관한 기타 사항은 본교 「산학협력중점교원 임용 규정」을 따른다. 〈신설 2024.8.12〉
 - ③ HK연구교수의 임용에 관한 기타 사항은 본교 「HK교수·HK연구교수 임용 규정」을 따른다. <신설 2024.8.12>
 - ④ 박사후연구원 임용에 관한 기타 사항은 본교「박사후연구원 임용 규정」을 따른다. 〈개정 2024.8.12〉
 - ⑤ 연구행정지원전담요원 임용에 관한 기타 사항은 「산학협력단 지원제도 관리지침」을 따른다. 〈신설 2025.12.04.〉
- 제15조(기타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계약서, 「근로기준법」 등 관련 법 령 및 산학협력단 제 규정 등에 따른다. 〈개정 2024.8.12〉

부 칙

(시행일) 이 제정 내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24. 8. 12.>

(시행일) 기존의 '산학협력단 연구원 임용 내규'는 '산학협력단 연구원 임용 규정'으로 공포일부터 격상하여 시행한다.

부 칙 〈개정 2025. 4. 25.〉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25. 12. 4.>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연구원 인건비 산정 기준

(단위: 원)

연구원	자 격 기 준	인건비 구성			인건비	인건비
구분 (직위)		월 급여 (월 지급액)	4대사회보험 기관부담금	퇴직금	예상 지급 총액 (월)	예상 지급 총액 (년)
연구 전담 교수	(책임자급)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으로 교수급의 연구실적을 가진 자로 비전임교원 임용절차에 의거하 여 임용된 자	6,000,000	648,000	500,000	7,148,000	85,776,000
	(책임급)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으로 부교수급의 연구실적을 가진 자로 비전임교원 임용절차에 의거하 여 임용된 자	4,500,000	486,000	375,000	5,361,000	64,332,000
	(선임급)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으로 조교수급의 연구실적을 가진 자로 비전임교원 임용절차에 의거하 여 임용된 자	4,000,000	432,000	333,333	4,765,333	57,184,000
박사후 연구원	박사학위 취득 후 3년 미만인 자	3,500,000	378,000	291,667	4,169,667	50,036,000
전임 연구원	박사학위 소지자,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5년 이 상 경력을 가진 자,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7년 이 상 경력을 가진 자	3,500,000	378,000	291,667	4,169,667	50,036,000
연구 보조원	석사학위 소지자,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3년 이 상 경력을 가진 자,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5 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	3,000,000	324,000	250,000	3,574,000	42,888,000
	학사학위 소지자,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2 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	2,500,000	270,000	208,333	2,978,333	35,740,000
	전문학사학위 소지자	1,300,000	140,400	108,333	1,548,733	18,584,800

- ※ 참여 과제 합산하여 월 급여를 초과할 수 없음
- ※ 인건비계상률(%) = 해당 연도(월)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÷ 연(월) 급여
- © 연(월) 급여: 해당 연도(월)에 참여한 전체 과제 연구비에서 인건비로 지급한 급여 총액이며 직위별 월 급여를 초과할 수 없음
- ☞ 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은 제외
- ※ 4대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= 월 급여 × 10.8% (4대 사회보험 요율 변동에 따라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)
- ※ 퇴직금 = 월 급여 ÷ 12
- ※ HK연구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인건비 지급 기준은 연구전담교수 자격 기준을 따르되, 산학협력중점교원 중 석사학위 소지자의 인건비 지급 기준은 전임연구원 자격 기준을 따름
- ※ 중앙대학교 CAU FELLOW, 명예교수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전임연구원으로 임용하고, 인건비 지급 기준은 연구전담교수 자격 기준을 따름. 단, CAU FELLOW는 본교에서 지급 받는 급여를 합산하여 연구전담교수 자격 기준별 기준 월 급여를 초과할 수 없음.
- ※ 학사과정 휴학생 중 3학년 이상 재학 후 휴학한 자와 학사과정 수료자의 경우 연구보조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, 인건비 지급 기준은 연구보조원(전문학사) 자격 기준을 따름